

#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93호    2019. 11. 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294호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삼척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 규정 ----- 2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3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고시 ----- 9
- 삼척시 고시 제13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15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91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8
- 삼척시 공고 제920호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1

공 람									
--------	--	--	--	--	--	--	--	--	--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삼척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10월 25일

## 삼척시장

삼척시 훈령 제294호

#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삼척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삼척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개정) 삼척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삼척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의 개정) 삼척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삼척시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제 운영 규정」의 개정) 삼척시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여행일정 정보

여행국가	여행일자	방문도시(지역)	교통편	현지시간	주요일정

### 5. 여행자별 경비내역

소속	직위	성명	여행경비						
			항공비(원)	일비(\$)	숙박비(\$)	식비(\$)	기타(원)	준비금(원)	합계(원)
합계									

■ 삼척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b>전자문서관리시스템 사용 신청서</b> (제12조5항 관련)				
관리책임자	부 서 명		직 · 성명	
	담당업무		전 화	
<b>비정규직 이용자</b>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부서				
이용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담당업무				
필요성 및 사유	<가능한 상세히 기재>			
삼척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b>삼척시장</b> 귀하				

※ 작성방법

1. 전화번호는 행정업무용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2. 비밀번호는 최초 비밀번호가 “1”로 설정되므로 최초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영문과 숫자로 6~8자 이내로 기재)
3. 관리책임자는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 삼척시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위촉 추천서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력	직 업	분야별	비 고
						(사진1매)

년 월 일

추천자 (인)

삼척시장 귀하

■ 삼척시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제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p>No.</p> <p style="text-align: center;">수 산 자 원 보 호 명 예 감 시 관 증</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유 효 기 간 :</p> <p>성 명</p> <p>생년월일</p> <p>삼 척 시 장</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 height: 2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직인</div>
---	---

후 면

본 증 소 지 자 의 임 무

1.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대국민 계도와 지도를 합니다.
2. 불법어업예방, 건전낙시 풍토와 자연환경보호 등 수산자원포획행위 발견시 삼척시 해양수산과에 즉시 신고·고발하여 주십시오.

※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삼척시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제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위촉대장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력	직 업	비 고



삼척시 고시 제2019-13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삼척시장

- 1. 고시기간: 2019. 11. 1. ~ 2019. 12. 1.(30일)
- 2. 산림보호구역 종류: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 경관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 3.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 붙임 내역서 참조
- 4.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유
  - 가. 지 정: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 나. 해 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 5. 산림보호구역 지정 연월일: 별도 지정 고시일
- 6. 이의신청
  - 가. 기 간: 2019. 11. 1. ~ 2019. 12. 1. (30일)
  - 나. 접수처: 삼척시청 산림녹지과(☎ 033-570-3927)

※ 본 고시에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붙임 이의 신청서 제출 또는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산림녹지과(☎ 033-570-39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구두)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지정 및 해제 예정지 1부.  
 2. 이의 신청서 1부. 끝.

구분	산림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단위:m2)	지정면적 (단위:m2)	소유구분	보호유형	세부유형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소계							3,512,133	2,605,334				
1	강원	삼척	근덕	동막	산381-1		431,207	431,207	사유림		경관보호구역	
2	강원	삼척	근덕	동막	산424-1		157,585	157,585	사유림		경관보호구역	
3	강원	삼척	근덕	공촌	산529		11,703	11,703	사유림		경관보호구역	
4	강원	삼척	근덕	공촌	산530-1		1,167,372	452,667	사유림		경관보호구역	
5	강원	삼척	근덕	매원	산278-2		263,406	263,406	사유림		경관보호구역	
6	강원	삼척	미로	내미로	산311		10,909	10,909	사유림		경관보호구역	
7	강원	삼척	미로	내미로	산314-6		1,223,504	1,031,410	사유림		경관보호구역	
8	강원	삼척	노곡	하마읍	산128		139,736	139,736	공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원시림
9	강원	삼척	노곡	하마읍	산134		106,711	106,711	공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원시림

구분	산 립 소 제 지				지목	지적면적 (단위:m2)	지정면적 (단위:m2)	소유구분	보호유형	세부유형
	도	시군	읍면동	리						
소계						853,275	853,057			
1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1	45,220	45,220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1-2	1,054	1,054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1-1	4,305	4,305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2-3	653	653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2-2	1,538	1,538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6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2-1	14,470	14,470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7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3	43,637	43,637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8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6	12,893	12,893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9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8	3,159	3,159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0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8-1	1,272	1,272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1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11-6	496	496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2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11-4	5,950	5,950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3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11-7	496	496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4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11-3	9,124	9,124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5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11-5	15,868	15,868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6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11-2	8,430	8,430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7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11-1	34,314	34,314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8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56-3	1,653	1,653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9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56-1	32,430	32,430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0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56-2	11,240	11,240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1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57-7	21,441	21,441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2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57-11	166	166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3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57-1	13,266	13,266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4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57-9	33,058	33,058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5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57-6	16,233	16,233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6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57-8	33,058	33,058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7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57-10	13,319	13,319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8	강원	삼척	미로	삼거	산58	27,570	27,570	자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9	강원	삼척	삼척	미로	삼거	삼60	임야	3,967	3,967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0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62	임야	44,453	44,453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1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63	임야	3,273	3,273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2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64	임야	1,388	1,388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3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65	임야	11,747	11,747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4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66	임야	6,248	6,248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5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67	임야	18,546	18,546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6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68	임야	16,860	16,860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7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69	임야	39,657	39,657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8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0	임야	3,967	3,967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9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1	임야	1,983	1,983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0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2	임야	37,091	37,091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1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4	임야	2,479	2,479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2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5	임야	8,529	8,529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3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6	임야	2,678	2,678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4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7-1	임야	31,113	31,113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5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7-8	임야	73	73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6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7-3	임야	999	999	공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7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7-6	임야	685	685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8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8-1	임야	35,744	35,744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9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9-1	임야	60,056	60,056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0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9-3	임야	20,507	20,507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1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79-14	임야	4,195	4,195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2	강원	삼척	삼거	미로	삼거	삼8-2	임야	14,995	14,995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3	강원	삼척	삼거	미로	고전	삼8-5	임야	1,666	1,666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4	강원	삼척	삼거	미로	고전	삼8-3	임야	24,496	24,496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5	강원	삼척	삼거	미로	고전	삼8-1	임야	8,033	8,033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6	강원	삼척	삼거	미로	고전	삼13-4	임야	958	958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7	강원	삼척	삼거	미로	고전	삼13-3	임야	5,951	5,951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8	강원	삼척	삼거	미로	고전	삼13-1	임야	25,642	25,642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9	강원	삼척	삼거	미로	고전	삼14-3	임야	8,895	8,895	사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 산림보호구역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m <sup>2</sup>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m <sup>2</sup>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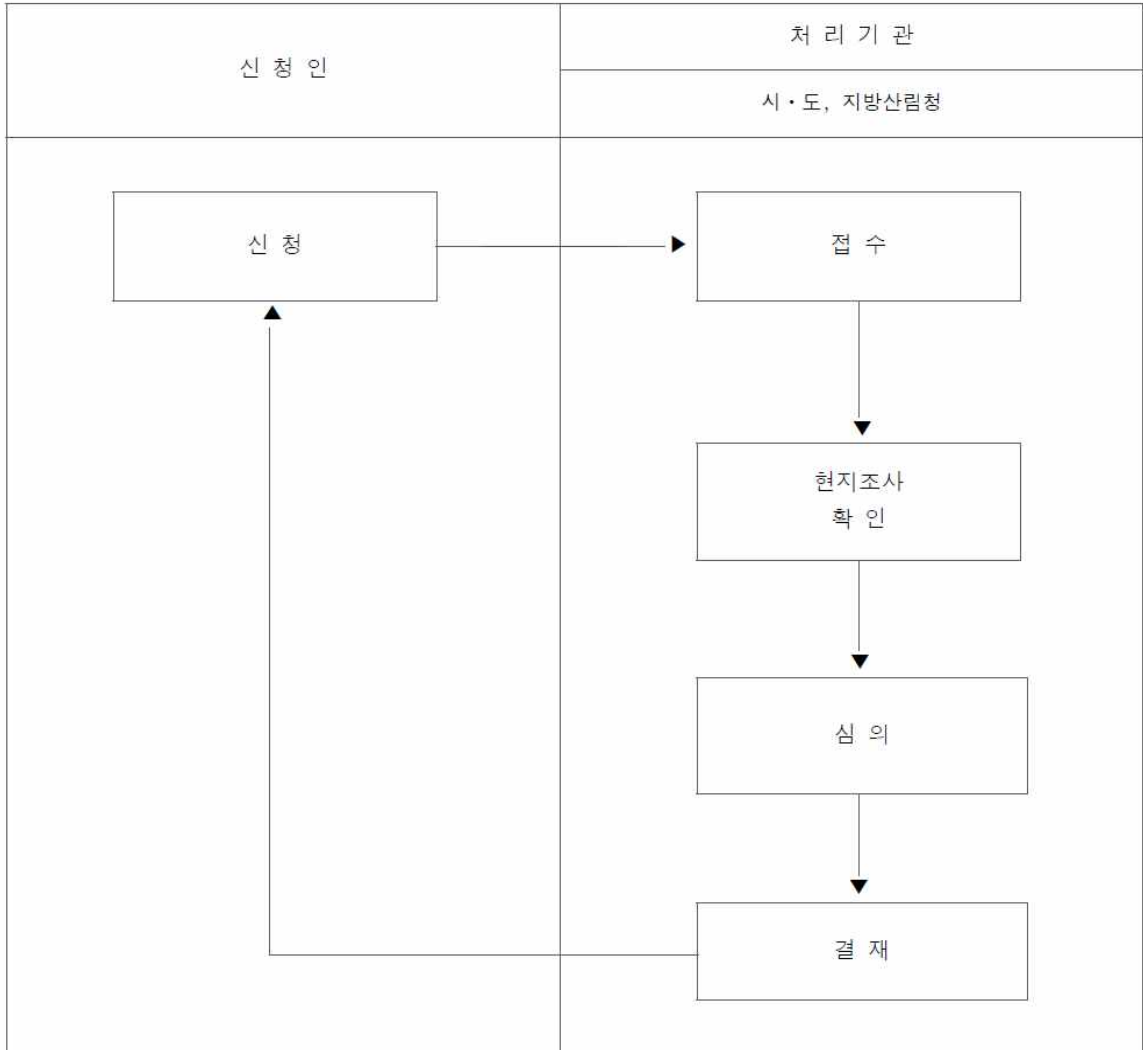
문경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삼척시 고시 제2019 - 131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45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1.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4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45	20191101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 으로기존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32-2, 432-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308	20191101		20090626	지역지명(심방,금계) 복합 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종전주소	계						
			계	2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4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45	20191101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신평방리 432-2, 432-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신평금계길 308	20191101		20090626	지역지명(신평, 금계)복합 활용		

삼척시 공고 제2019-91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9.10.28. ~ 2019.11.11.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11.12.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박상○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02 벽돌조/시멘트슬라브 (1층:60.54㎡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8.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h2 style="margin: 0;">의견제출서</h2>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padding: 2px;">성 명</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주 소</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삼척시장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19-920호

##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삼척시장

### 1. 제안이유

삼척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소산업 육성 방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육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8조)
- 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
- 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안 제15조)
- 마. 수소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3. 의견제출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
- 전 화 : 033-570-3742
- 팩 스 : 033-570-3181
- 전자우편 : peace00@korea.kr

#### 4. 그 밖의 사항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http://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활용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시범·특화단지”란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및 융복합을 통하여 분야별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수소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주거·교통 등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기반시설을 조성 확대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특별히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및 수소산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수소산업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수소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삼척시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운영
3.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발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7. 수소시범·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부터 제6호 및 수소 시범·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사업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10조(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조정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업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사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사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5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6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단체 및 법인을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